사단법인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그라운드골프지도자 규칙

제정 2008. 10. 09
개정 2014. 01. 06
개정 2016. 06. 23.

제1조 (총 칙)
본 규칙은 그라운드골프지도자 제도에 따른 시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단법인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지도자 제도 시행 관한 것을 정한다.

제2조 (정 의)
그라운드골프 이념에 찬동하고 그라운드골프를 통하여 스포츠의 진흥과 육성에 기여하는 회원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각급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지도자 구분) 지도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master)
2. 2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gold)
3. 3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silver)

제4조 (지도자의 임무) 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
1. 3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silver)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을 중심으로 대한협회의 이념을 구현하고, 그라운드골프의 보급・진흥에 이바지 하는 사람
2. 2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gold)
   시・군・구를 중심으로 클럽을 지도하고, 각종 사업계획과 조직의 육성 강화에 이바지 하는 사람
3. 1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master)
   시・군・구와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와 시・도의 각종 사업계획 및 조직의 육성 강화에 이바지 하는 사람

제5조 (지도자의 양성과 자격) 지도자 양성과 자격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급 지도자
   1년 이상 협회의 회원으로 존속하면서 시・군・구협회장의 추천에 의거
   [별표] 3급 지도자 강습회 과정을 수료한 후 3급 지도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2급 지도자
   3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고, 시・도협회장의 추천에 의거

〔별표〕 2급 지도자 강습회 과정을 수료한 사람

3. 1급 지도자
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고, 시·도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별표〕1급 지도자 강습회 과정을 수료한 자 조직과 육성, 강화에 기여한 사람

제6조 (지도자의 자격 상실) 그라운드골프지도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협회의 회원에서 탈퇴하였을 때
2. 그라운드골프지도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조직의 지탄을 받을 때
3. 이유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4. 자격 상실한 회원의 자격부활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칙은 2009년 2월 24일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있은 그라운드골프강습회 수료증을 받은 자로써 협회비를 6개월이상 납부한 자는 3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 강습회를 이수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02. 11 개정)

제1조 본 규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3 개정)

제1조 본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그라운드골프지도자 양성강습회 교육과정

구분 / 시간	3급 지도자(silver)	2급 지도자(gold)	1급 지도자(master)
1시간	그라운드골프 일반	그라운드골프 일반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
1시간	그라운드골프 초보자의 지도 (에티켓, 매너 포함)	2급 지도자의 임무	1급 지도자의 임무
1시간	그라운드골프와 건강 안전	그라운드골프의 지도 요점	그라운드골프의 지도와 과제
1시간	그라운드골프의 규칙	그라운드골프와 건강 안전	그라운드골프와 건강 안전
1시간	그라운드골프의 실기	그라운드골프 시·군·구 협회 경영	시·도협회의 경영
1시간	-	그라운드골프 시·군·구 협회에서 대회 운영의 실제	시·도구역에서의 대회· 연수회의 기획운영
1시간	-	연구협의 및 평가	연구협의 및 평가